

#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회 및 운영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5. 21 평창군수(기획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. 6. 4
- 다. 상정일자 : 1999. 6. 4 제6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

### 2. 제안이유

- 새로운 100년, 새로운 1,000년인 21C를 주도하기 위한 평창군의 비전제시 및 군정계획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군정과 지역의 발전 및 중요정책 수립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기능(제2조)

-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사항,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사항, 중·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, 군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,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등 자문

#### 나. 구성(제3조)

- 군정과 지역발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·관광·농축업·환경·산림·통상·마케팅등 전문가 및 교수 10명 내외로 구성

#### 다. 위원의 임기(제4조)

- 위원의 임기는 2년, 연임 가능

#### **라. 위원의 위·해촉(제5조)**

- 위원은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

#### **마. 위원의 직무(제6조)**

- 군수는 제2조에 관한사항을 위원에 과제연구 용역
- 위원은 과제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시 간부회의 또는 월례조회때 발표

#### **바. 실비보상(제8조)**

- 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할 경우 일비와 여비를, 과제연구를 한 경우에는 과제연구비를 지급

### **4. 검토 의견**

#### **가. 먼저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법을 살펴보면**

-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될 것임.

#### **나. 자문위원의 역할로서는**

- 본 조례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닌 위원 개별적 자문기구로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상시에는 업무추진상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고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연구용역을 주어 과제를 발굴하게 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**다. 그건의 추진과정 향후계획을 보면**

- 본 기구의 명칭은 당초 “21C학술자문위원회”로 계획하였으나, 기구 성격상 타위원의 연구에 대해 다른위원이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성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“21C신지식자문위원”

으로 변경하여 개별적 기구로서 설치할 계획이며

- '99당초예산에 “21C학술자문위원회” 실비보상금(일비및여비등) 4,000천원과 연구용역비 30,000천원을 계상하였다가 실비보상금을 제외한 연구용역비는 삭감조치된 사항임.
- '99년도는 근거인 조례만 제정하여 위원만 위촉하고 2000년도 부터 용역비를 계상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라. 종합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21C를 대비한 시책발굴 의지가 반영된 조례로서 조례제정시 자문위원 위촉에 관하여는 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위촉이 절실히 요구되며,
- 차후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예산등이 우반될 것임.
- 기타 자구에는 별문제점이 없음.